



인도네시아 세무 안내

국세청장령 개정 No. PER-18/PJ/2017 : 토지 및/또는 건물의 권리의 이전과 매매 계약 약정에 대한 소득세 납부영수증 검증 절차 개정안

국세청장은 (DGT) 토지 및/또는 건물의 권리의 이전과 매매 계약 약정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의 검증에 관한 규정 No. PER-18/PJ/2017를 개정한 No. PER-26/PJ/2018을 발행했다.

납세자는 필요한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서로 납부서 검증 요청서를 수동으로 제출해야한다. 납세번호가 등록된 납세자의 경우, 규정의 첨부에 제공된 양식을 사용한 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는 첨부에 제공된 문서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는 소득세 납부 목록과 함께 수동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부동산의 매매/전매 거래가 특수 목적 법인(SPC)과 이루어 지는 경우, 추가 근거 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번 호:

1. 국세청장령 개정 No. PER-18/PJ/2017 : 토지 및/또는 건물의 권리의 이전과 매매 계약 약정에 대한 소득세 납부영수증 검증 절차 개정안
2. Tax Holiday 에 의한 법인세 감면 규정
3. 매매 거래에서 특정 조건의 달성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수령한 보상에 대한 과세 방법
4. 소득 세액과 관련하여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 비준

세무서는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가장 10영업일 이내에 검증 완료 확인서 발급해야 한다.

본 규정은 2018년11월22일부터 적용되었다.

Tax Holiday 에 의한 법인세 감면 규정

- 2018년11월 26일에 발행된 재경부 장관 법령 No. 150/PMK.010/2018 ("PMK-150")은 법인 소득세 감면 부여에 관한 기존 법령 No. 35/PMK010/2018 ("PMK-35")을 대체한다. 본 규정은 2018년11월27일부터 적용되었다.
- 본 새로운 규정은 국내 투자 증가를 촉진하고 법인세 감면에 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PMK-35 규정과 비교하여 PMK-150 규정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투자는 최소한 IDR 100,000,000,000 (1 천억 루피아)이다;
 2. 법인세 감면은 법인세 납부액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 까지 허용된다;
 3. 선도 산업의 종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18가지 종류);
 4. 해당 법인세 감면 신청은 OS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경과 규정:

1.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수령 및 / 또는 활용한 납세자는 지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 2018년4월4일부터 PMK-150이 발효 될 때까지 제출된 감면 신청서는 PMK-35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3. No. 103/PMK.010/2016시행이전에 투자 조정청으로부터 발급된 기본 허가, 투자 허가, 투자 등록 또는 사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는, PMK-150을 기준으로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투자 조정 위원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선도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PMK-35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No. 103/PMK.010/2016는 법인세 감면 부여에 관한 재경부 장관령 No. 159/PMK.010/2015의 개정 규정이다.

매매 거래에서 특정 조건의 달성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수령한 보상에 대한 과세 방법

국세청장은 매매 거래에서 특정 조건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매자가 수령한 보상에 대한 과세 처리 지침을 SE-24 / PJ / 2018로 발표하였다.

매매 거래에서 약정하는 특정 조건이라함은 서면 또는 비 서면약정에 불구하고 매매 거래에서 특정 조건의 달성함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특정 공간이나 장비/기구를 제공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특정 판매 프로그램이나 가격보전, 배송지연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21조/23조/26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VAT)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이나 부채감면 형태의 인센티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

특정 공간이나 장비/기구의 제공형태의 인센티브는 소득세 법 제4조 (2)항의 분리과세 소득세 또는 제23조/26조 소득세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은 21조, 23조 또는 26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며, 재화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 될 수 있다.

본 회람은 2018년11월29일에 발행되었다.

2018년 대통령령 제75호

소득 세액과 관련하여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 비준

-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는 2011 년 2 월 28 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 세르비아 이중 과세 방지 협정 (DTA) 협약에 서명했다.
- 이 의정서는 2018 년 9 월 17 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에 의해 비준되었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mehimawan@deloitte.com
Balim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jlauwrenz@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Turmanto	Business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Yoon Young Jun	Transfer Pricing	yoonyoungjun@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approximately 340 partners and 8,8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and their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